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6. 11. 26.(화) ~ 12. 2.(월) (7일간)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구의회사무국

나. 사무의범위 : 구의회사무국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 위원장 | 간사  | 감사위원                                | 전문위원 | 직원                 |
|-----|-----|-------------------------------------|------|--------------------|
| 배기한 | 김충응 |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손영상<br>심용진, 전병운, 조용호 | 허영훈  | 사무국<br>직원2<br>속기사1 |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일시                     | 감사장소           | 감사대상          | 비고                                    |
|------------------------|----------------|---------------|---------------------------------------|
| '96. 11. 26<br>~ 12. 2 | 영등포구의회<br>소회의실 | 영등포구의회<br>사무국 | 필요시 현장확인<br>* 감사일정에 따라 변<br>경이 있을수 있음 |

### 6. 감사요령

| 대 상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 비 고  |
|------------|---|--|--|
| 구의회<br>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 및 답변</li> <li>○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li> <li>· 회의의 방청 및 참관</li> <li>·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li> <li>· 의회소관재무, 회계에 관한사항</li> <li>· 의회소관예산편성 및 집행총괄</li> <li>· 청원의접수, 이송 및 처리 결과통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관계 공무원</li> <li>-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li> </ul> |

### 7. 감사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감사반장)
- 위원장 인사
  -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
  -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 선서
- 국장인사 - 간부소개
- 현황보고 -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 질의, 답변 - 개별 및 일문일답식 감사
- 서류 및 현장확인 - 관계인 출석, 증언, 의견청취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 8.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 가.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1996년도 업무계획서
  - 199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1996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1996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1996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처리부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나. 제출부수 : 15부
- 다. 감사요구자료
-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6. 1월 이후의 것을 작성
  -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
- 라. 제출처 : 운영위원장

###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 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 10.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가. 회기중에는 방청인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출입증패용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나.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관리철저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재무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6. 11. 26.(화) ~ 12. 2.(월) (7일간)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3 실(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 각동사무소

나. 사무의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 위원장 | 간사  | 감사위원                                     | 전문위원 | 직원                 |
|-----|-----|--|------|--------------------|
| 이용주 | 손영상 | 김진국, 김충용, 손병옥, 유남열<br>임창수, 정종태, 최수영, 황호천 | 허영훈  | 사무국<br>직원2<br>속기사1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일 시         | 감 사 장 소           | 감 사 대 상                    | 비 고                    |
|-------------|-------------------|----------------------------|------------------------|
| '96. 11. 26 | 제1감사장             | 문화공보실<br>감 사 실<br>시민봉사실    | 필요시<br>각동사무소<br>및 현장확인 |
| 11. 27      | .                 | 총 무 과<br>기획예산과             |                        |
| 11. 28      | .                 | 사회진흥과<br>민방위재난관리과<br>여 권 과 |                        |
| 11. 29      | .                 | 재 무 과<br>세무관리과             |                        |
| 11. 30      | .                 | 부 과 1과<br>부 과 2과<br>지 적 과  |                        |
| 12. 1       | ----- 공 휴 일 ----- |                            |                        |
| 12. 2       | .                 | 강 평                        | 필요시<br>각동사무소<br>및 현장확인 |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요령

| 대 상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 비 고  |
|-------------------|---|--|--|
| 3 실<br>총무국<br>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 및 답변</li> <li>○ 서류 및 현지확인 (필요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도 직원상벌 현황</li> <li>· 새마을, 바르게등 유관 단체상벌 현황</li> <li>· '96년도 시행한 각종행사 현황</li> <li>· 감사원 감사수감사항</li> <li>· 예산집행내역</li> <li>· '96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li> <li>· 새마을, 바르게등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li> <li>· '96년도 사안별 세출예산 배정현황</li> <li>· 통반장 신문구독현황</li> <li>· 민간단체 예산보조내역</li> <li>· 각종 행사시 찬조금에 대한 사항</li> <li>· 주민진정 및 처리내역</li> <li>·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li> <li>· 통장단 자녀장학금 지급내역</li> <li>·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li> <li>· 시민봉사실 연도별 상담실적</li> <li>·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사항</li> <li>· 반상회보 운영현황</li> <li>· 문화행사 행사별내역</li> <li>· 관내공연장 점검사항</li> <li>· 관내문화재 관리현황</li> <li>· 유관단체 금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li> <li>· 청산금 정리사항</li> <li>·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li> <li>· 지방세, 시세, 세목별 징수실적</li> <li>· 공유재산 관리현황</li> <li>·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li> <li>· 과오납 발생현황</li> <li>· 물품구매내역</li> <li>· 위원회 운영현황</li> <li>· 각동 소규모사업 추진 사항 내역</li> <li>· 재정계획 수립현황</li> <li>· 기타위원이 필요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관계 공무원</li> <li>-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li> </ul> |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기획예산과 | <p><b>제 목</b> 구정발전 연구모임 구성에 대한 건의</p> <p>현재 구성 추진중인 구정발전 연구모임이 다양화 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폐차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가로수 식재방법 개선등 다수의 제안등을 구정에 반영 행정쇄신을 추진해 나가는 좋은 제도로 생각</p> <p>우리구 차원에서 이러한 모임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자유롭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합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총무과<br/>각동사무소</p> | <p><u>제목</u> 관급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설치</p> <p>구에서 발주하여 각 동별로 시행되는 토목, 하수도, 소규모 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현재 각동 명예감시관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장 책임하에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총무국 및 관계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총무과  | <p><u>제목</u> 방법원 운영상의 문제점</p> <p>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법원 154명중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이 각동에 배치되어, 특별히 할 수 있는 정해진 업무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무의욕의 저하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총무과의 구정연구계에서 이들 방법원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사회진흥과 | <p><b>제 목</b>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 운영실태</p> <p>연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각종 국민운동 단체원등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으나 운영실태를 보면 단체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경우나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등 선진지 시찰의 근본 목적과 다른 관광차원의 행사로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하는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감사실<br/>건설관리과</p> | <p><u>제목</u> 불법도로 점용 단속 철저</p> <p>여의도, 영등포 삼각지내 심야에 각종 포장마차 등이 보차도를 점령하고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통행의 방해나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경찰과 합동으로 일체 철거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철거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지도, 계몽을 해야 할 것이며 사진 촬영이나 현장 증거보전 및 고발 등 행정처벌을 강화하여 밝고 깨끗한 영등포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감 사 실 | <p><u>제 목</u> 진정 등 민원 업무처리 철저</p> <p>자치시대 이후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이 폭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처리시 처리 기한이나, 결과회신 통보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전문인력을 적정 배치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정확하고 언제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등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문화공보실 | <p><b>제목</b> 구정 홍보의 강화 방안</p> <p>현대는 자기 P.R의 시대이고 멀티미디어(영상) 시대라고 하는데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의 살림살이와 각종 시책, 복지 정책 등 지금보다도 더 많은 주민홍보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구정홍보 및 안내책자, V.T.R 제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 구정 발전과 주요문화 행사 등 대 주민 홍보를 위해 V.T.R 영상 홍보물을 기획, 제작 할 것을 건의합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기획예산과</p> | <p><u>제 목</u> 행정 전산화 추진 철저</p> <p>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업무의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전산기의 처리 용량의 부족과 전문 전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잦은 전산망의 장애로 인해 민원행정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다가오는 21세기의 행정 수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전산망을 일제 정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행정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재무과  | <p><u>제목</u> 장비 및 물품 구매 계획의 적정운영</p> <p>각종 소모품 또는 비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조달구매나 일반 구매에 있어 내구년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알뜰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비록 내구년한이 다 되었더라도 물품의 상태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며, 비품의 재고 및 소요파악을 정확히 하여 구매 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해 예산 절약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여권과  | <p><u>제목</u>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p> <p>현재 구청사 5층에 위치하여 하루에도 4~500여명의 민원인이 출입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나, 다소 몸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여 구정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바,</p> <p>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실을 1, 2층으로 재배치하여 우리구에 민원을 보러오는 일반인들에게 밝고 좋은 환경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총무과  | <p><u>제목</u>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이행</p> <p>'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동신고분 신축건물의 준공후 불법 증, 개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소홀로 각동 담당들의 업무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똑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으며,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감사시의 구의회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잘된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된 부분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구의회 의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총무과  | <p><u>제목</u>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증된 회사물품 관리 실태</p> <p>각동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증되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회사물품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관품관리는 철저히 관리대장에게 의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나 회사품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도 없이 각 동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관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장관리 및 필요하다면 관리비도 지급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민방위재난<br>관리과 | <p><u>제목</u> 민방위 과태료 부과 문제점</p> <p>민방위신고, 교육훈련 위반 등에 대하여 현재 고발 및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을 기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제도의 문제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연구 검토하여 상급기관의 건의 등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건설관리과</p> | <p><b>제 목</b> 영일시장, 조광시장내 불법도로점용 단속철회</p> <p>지난 8월 신길동과 당산동을 잇는 고가도로가 개통되었으나 기존의 시장상인들의 불법도로점용이 극심하여 도로 이용율이 저조하고,</p> <p>현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단순히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을 부과할 것만 아니라 노선버스 유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관련 실·과 및 일선 동은 상호 긴밀한 협조아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문화공보실 | <p><u>제목</u>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 교류 실태</p> <p>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매 결연지에 대한 어린이 상호 방문 교류는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나 행사 시기나 방문 어린이 대상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자매 결연지 3개군과 어린이 상호 방문 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적절한 행사 시기의 선택이나, 또 방문 어린이 대상자 선정 시 많은 어린이가 고르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문화공보실 | <p><u>제목</u> 각종 문화 행사의 주민 홍보 철저</p> <p>우리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문화 행사의 홍보가 미흡하여, 일부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게 되고 특히 구민회관에서 보여주는 무료 영화 상영 등은 가까운 지역 주민들만 알고 보게 되는 등 주민홍보가 미흡한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좋은 영화를 유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무료영화 상영제도를 각 학교 등에 공문을 우송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사무소, 반상회, 지역신문, 케이블T.V., 포스터 부착 등을 늘려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기획예산과 | <p><u>제목</u> 각종 소송관련 배상금 예산 집행의 문제점</p> <p>우리구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송을 위한 비용은 예산에 편성 지출되고 있으나 배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예산 편성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허용한다면 패소시의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 시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행정과 | <p><b>제 목</b> 마을 버스 신설 및 노선 확충</p> <p>당산철교 및 양화대교 구교의 철거 등 지하철 노선의 단절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체증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난 해소 및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억제 등 지역단위별 마을버스를 신설하여 노선을 늘리는 등 마을버스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청장께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문화공보실 | <p><b>제 목</b> 지역문화재 보호 및 육성방안에 대한 건의</p> <p>당산2동에서 매년 실시되는 부군당제는 각동과 주민의 민속신앙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풍속으로 지방화시대·자치시대의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에 당연히 구청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문화재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 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총 무 과 | <p><u>제 목</u>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p> <p>각종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적극적인 여가선용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이에 본 위원은 (구) 영등포공고 자리에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스포츠 센터 등을 건립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들과의 융화 및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나 스포츠 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p> | 건의사항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건축과</p> | <p><u>제목</u>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의 확대</p> <p>현재 건축과와 관련된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주민들이 잘알지 못하는 관련법규나 업무지침, 번잡한 절차나 업무지연 등으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난 '96. 1. 6. 부터 건축법 제18조가 개정되어 사용승인시는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반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여러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나 지침의 개정 등이 있을때 각종 홍보 및 관련 설계 감리 건축사, 관계 직원들의 정신 및 인성교육을 충분히 하여 관계공무원과 주민사이에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p>사회진흥과</p> | <p><u>제 목</u> 체육시설물 활용 실태</p> <p>현재 우리구 주민이 쉽게 이용하고 주민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 설치한 게이트볼장이 개장이후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태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동호인 조직이 활성화 및 생활체육교실 개최, 또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의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육시설을 신설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시민봉사실 | <p><u>제목</u> 전화민원 증명 발급 실태</p> <p>현재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전화민원을 통하여 발급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 바 민원서류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서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민원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시민 홍보(반상회보, 기타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li><li>• 제도의 보완 운영 및 민원서류의 발급 교부율을 높일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사회진흥과 | <p><b>제 목</b> <u>유관단체 지원예산 집행 부적정</u></p> <p>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시민교<br/>통량 줄이기 캠페인('96. 7. 9) 행사시 예산집행에 있어 영수증에<br/>근거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나 각동 협의회장에게 일률적으로 같은<br/>금액을 지급하여 정산한 사례가 있음.</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행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시 행사준비물 구매 또는 식대 등의 예<br/>산을 집행하면서 비용의 적정 계상,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하<br/>여 정산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p> |     |

### 행정 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사회진흥과 | <p><u>제목</u>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과정의 문제점</p> <p>현재 각동에서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새마을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되어 자격기준 등 일부 부적합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해주어야 할 대상중에서 선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발시 새마을지회로부터 2 배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하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감사실  | <p><u>제목</u> 불법주차실태 현장확인</p> <p>양평2동6가 20번지 기아자동차서비스 센터 진입로 주변도로의 무단주차에 대한 현장확인한 바, 진입로앞 도로에 불법주차차량 17대 ('96. 11. 26)가 주차하고 있어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화재 등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현장확인결과 도로점용허가 관계 및 주차시설 확보 등을 통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    |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시민보사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6. 11. 26.(화) ~ 12. 2.(월) (7일간)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시민생활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 각동사무소

나.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 위원장 | 간사  | 감사위원                                     | 전문위원 | 직원                 |
|-----|-----|--|------|--------------------|
| 이명훈 | 전병운 | 김동철, 김형수, 노동우, 박정자<br>심용진, 서홍선, 이정운, 최락희 | 유재한  | 사무국<br>직원2<br>속기사1 |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일 시         | 감 사 장 소           | 감 사 대 상                                   | 비 고  |
|-------------|-------------------|---|--|
| '96. 11. 26 | 제2감사장             | 보건행정과<br>보건지도과<br>의 약 과                   | 필요시<br>현장확인<br><br>※ 감사일정에<br>따라 변경이<br>있을 수 있음. |
| 11. 27      | .                 | 사회복지과<br>가정복지과<br>위 생 과                   |  |
| 11. 28      | .                 | 지역경제과<br>환경관리과<br>생활환경과                   |  |
| 11. 29      | .                 | 보건행정과<br>보건지도과<br>의 약 과<br>사회복지과<br>가정복지과 |  |
| 11. 30      | .                 | 위 생 과<br>지역경제과<br>환경관리과<br>생활환경과          |  |
| 12. 1       | ----- 공 휴 일 ----- |   |  |
| 12. 2       | .                 | 강 평                                       | 필요시<br>현장확인                                      |

## 6. 감사요령

| 대 상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 비 고  |
|----------------|---|---|--|
| 보 건 소<br>시민생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 및 답변</li> <li>○ 서류 및 현지확인<br/>(필요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 등의 현<br/>황</li> <li>· 문서, 예산, 인사 현황</li> <li>·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 현황</li> <li>·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현황</li> <li>· 급성전염병 예방 현황</li> <li>·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br/>관한 사항</li> <li>·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li> <li>·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예방접종 계획 수립 현황</li> <li>·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br/>사항</li> <li>·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br/>항</li> <li>·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li> <li>· 새마을 노임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부랑인 단속(남녀포함) 수용보호(남<br/>자수용시설) 및 행려사망자처리 현황</li> <li>·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li> <li>·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처리 등에<br/>관한 사항</li> <li>· 구인, 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현<br/>황</li> <li>· 직업안내소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li> <li>·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br/>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관계<br/>공무원</li> <li>- 소관국장 및<br/>관계공무원</li> </ul> |

| 대 상            | 감 사 방 법   |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 비 고  |
|----------------|---|--|--|
| 보 건 소<br>시민생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 및 답변</li> <li>○ 서류 및 현지확인<br/>(필요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례(묘지, 매· 화장, 장의, 예식 등)에 관한 사항</li> <li>·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현황</li> <li>· 청소년 종합시책 수립 및 조정 현황</li> <li>·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li> <li>·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 단속업무 추진계획 수립 현황</li> <li>· 공장등록과 실태현황</li> <li>· 연료수급조절과 연료판매소 허가</li> <li>· 가스안전 관리업무 및 가스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li> <li>·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li> <li>·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관계 공무원</li> <li>-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li> </ul> |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전 과  | <p><u>제목</u>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정확한 업무파악 추진 요망</p> <p>'96년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주무국장,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차후, 최소한도 주무국장 및 과장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세입,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최소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사무추진 및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방화시대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기를 요망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가정의레업소 지도 감독 소홀</p> <p>'95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의레업소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96년에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실적밖에 없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96년에는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켰음.</p> <p>'97년에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여성자원 봉사활동 내용 시정</p> <p>약 30명의 여성자원 봉사자가 개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시간당 각500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여성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병원에 인력을 지원하여 특혜를 주었으며 꼭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돕지 못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추후로는 이를 시정하여 효율적인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겠음.</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생활환경과 | <p><u>제목</u> 정화조 청소문제</p> <p>현행 대행회사로부터 1년에 1회씩 청소를 함에 2회의 보통우편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바, 본인이 우편통지를 받지 못하여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순이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① 정화조 미청소 세대에 대한 독촉장 발송 2회중 1회는 보통우편으로 2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기 바람.</p> <p>② 1년에 1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음으로 청소일자가 도래하면 청소일자를 반드시 통보하여 직접 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생활환경과 | <p><u>제목</u>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실시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p> <p>내용 : 지역주민의 매립지 방문견학 등의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할 수 있으나 참여주민수가 부족하고 아직도 환경미화사업이 업무효율을 거두기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됨.</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그동안 반상회보를 활용하거나 포스터 제작배포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등을 홍보해 왔으나 아직도 분리수거 배출방법조차 잘 모르고 있거나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고 봄.</p> <p>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적절한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사회복지과 | <p><b>제 목</b> 한사랑마을 신축공사 수의계약 관련 의혹에 관한 건</p> <p>내용 : 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의거 예정가 1억이상의 공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 경쟁입찰에 붙어야 함에도 총공사비 1666백만원(국·시비 1449백만원 법원자부담 217백만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단순히 연고권을 들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것은 엄연한 탈법 행위로서 상당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음.</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집행 당사자는 물론 감독관청조차 그 감독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보건행정과 | <p><u>제목</u> 방문 간호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p> <p>내용 : 의례적인 환자방문, 단순간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재활 또는 이들의 사회복지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예산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례적인 실적위주의 방문 간호사업을 탈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사회복지 훈련,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부실운영에 관한 건</p> <p>내용 : 적은 예산으로 무임승차를 일삼는 실적위주의 행사집행 결과 운영상 상당한 무리를 빚어낸 바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행사주체로서 적정비용을 부담하여 한 번의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폭넓은 호응과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지역경제과 | <p><b>제 목</b>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업무에 관한 건</p> <p>내용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추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민관합동개척단을 구성하여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3국을 방문하고 나름대로는 다소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기획집행과정 등에서 상대 방문국 선정에서부터 사전조사 등 준비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됨.</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참여 희망업체 저조, 업체들의 소극적자세 및 결과론적 실적 저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관내 중소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여하고자 경쟁이 치열해지도록까지 되어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생활환경과 | <p><u>제 목</u>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 봉투의 각 동에 배정의 문제점과 배정 이후의 행정지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사용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뒷골목이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각동에 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지불되었을뿐 더러 각 동에서 배정을 받아 지역에 배포할 때에도 맹목적으로 지급되어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사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남발한 결과를 초래되었는 바, 앞으로는 그동안 2년 가까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문제점을 참고하여 무계획적인 배포를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봉투를 이용할 수 있는 해당자를 엄밀히 파악하여 많은 매수를 한 번에 지급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매수만 지급하기 바라며, 각동에 수불내용을 보면 최저 3,000매 최고는 10,900매까지 지불되어 있는 바, 각동에 적정하게 시정바람.</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지역경제과 | <p><u>제목</u>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양봉농가 지원에 관한 건</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구민보건차원에서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양봉농가에 꿀벌용 애류 870군을 구비로 지원한 것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이용실적 저조</p> <p>'96. 1 ~ 9월까지 9개 독서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총액은 361,269천원이었으며 그동안의 독서실 이용 실적은 총 80,150명에 불과함.</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지원액을 이용자수로 나누면 이용자 1명에게 그동안 평균 4,507원을 지원한 꼴이며 한 좌석당 1개월에 8명 이용한 결과로 이는 1개월에 8일만 사용한 수치임.</p> <p>막대한 지원액에 비해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임.</p> <p>추후 생산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홍보 도서비 지원 시정</p> <p>당초 홍보비와 도서 구입비의 지원 비율은 22%대 78%로 지원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율은 홍보비로 63% 도서 구입비에 37%를 지출하였으며 홍보비 지출의 대부분을 구에서 제작한 책받침 구입비 및 발송비를 소요하였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청소년 독서실(공부방)에 대한 지도 지원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지원금의 대부분을 홍보비로 증당하였으며 이러한 파행 지출의 주원인을 담당과에서 제공한 결과가 되었음.</p> <p>추후로는 지원 예산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분석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의약과  | <p><u>제목</u> 의료기관 적출물 취급 불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 소 :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li> <li>○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li> <li>○ 대 표 : 최 창 락</li> </ul> <p>상기업소는 영등포구의회 시민보사위원회 행정감사현장 점검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현장 목격된 사안으로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류하여 수거처리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사용하였던 거즈, 주사침, 수액주사 세트 등의 적출물 약500g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보관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이는 의료법 제17조2항에 의거 행정조치 사항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적출물은 분류·수거·처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기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일반쓰레기 봉투 100리터분 3개에서 적출물 약 500g이 수거케 된 것은 국민보건건강상 도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위 의료기관업소는 지난 6월 영등포경찰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 적발된 것은 관계법에 따라 의료조치하여야 된다고 사료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위생과  | <p><u>제목</u> 식품제조 유통의 문제점</p> <p>우리구 관내에는 각종 식품제조업소가 과자제조업을 포함해 약 230개 업소가 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 국민의 식단에 가장 많이 오르는 두부류 제조업체는 6개업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업소 모두 영세업소로써 물류 도소매 유통시 규정된 냉온동 차량으로 유통일자를 기록하여 유통되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어카나 소형화물차에 마구 방치되어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환경 유해에 우려를 주고 있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은 전혀 단속이나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실정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각종 식품제조업체에 수시로 점검 단속하여 국민보건 환경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지역경제과 | <p><b>제 목 '96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 결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시장 개척업무 예산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총무국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추진의사가 미약</li> <li>2. 사전기획과 홍보가 미흡하여 당 영등포구에는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저조</li> <li>3. 방문국의 시장동향을 사전조사하고 국가별 적절한 외교전략을 갖추고 출국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li> </ol>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96년도 첫 사업으로 일백만불 계약실적을 볼 때 상업 및 중소기업의 산도시인 우리구에서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업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소관과의 책임하에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편제하여야 할 것임.</li> <li>2.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개척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문인에게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업체에 대한 공한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96년도 사업은 항공료 및 체제비 전액을 참여업체가 부담하였으나 '97년부터는 이를 구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어 많은 업체가 자원 등록케하여 전망있는 상품 및 업체를 선별하여 더 좋은 수출실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이 철저해야 한다고 사료됨.</li> <li>3. 방문국의 시장동향 및 정보를 해당관계자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참여업체의 생산제품을 상세히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종합단일 책자로 제작하는 등 중장기적인 해외 수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요함.</li> </o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생활환경과 | <p><b>제목</b>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활동미비의 내용</p> <p>'96년도 사업목표인 맑은 영등포 만들기의 일환으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질높은 청소서비스 제공 구청장방침 제1171호('95. 9. 23) 참조 및 시계 67503-463('95. 9. 27)호 및 입지선정 구성근거(법 제9조2항)에 의거 영등포구청 문서번호 청소 67510-211('96. 1. 30)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의거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전문직 교수 2명, 주민대표 2명 등 총 8명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에는 입지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종합민원대책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요청 등 '96년도 월중 세부사업계획 준비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공문통보는 물론 이에 필요한 용역료 및 제반예산 1억 8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놓고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물론 단 10원도 집행할 못하고 안일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입지선정위원의 우롱과 43만 영등포구민을 회롱하는 등 이는 분명 타 구청의 회의실적이나 추진실적으로 보아 우리구 관계 공무원은 탁상행정에 공론하는 등 실책이 있다고 사료됨.</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의 거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때 당 구청에서는 적절한 입지장소만 선정하면 전액 시비보조로 지원되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관계공무원의 운영미비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빠른 시일내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생활환경과 | <p><u>제 목</u> 예산편성의 문제점</p> <p>'96년도 일반운영비를 무계획하게 수립하여 다음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액</li> <li style="padding-left: 40px;">- '95년도 73,618</li> <li style="padding-left: 40px;">- '96년도 107,573</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성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예산편성의 문제점</p> <p>'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무계획하게 수립하여(검토 불충분)<br/>다음과 같이 불용액이 발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용액</li><li>- '95년도 951,442,620</li><li>- '96년도 1,248,404</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성의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보건행정과 | <p><u>제목</u> 예산사용의 문제점</p> <p>'96년도 일반회계 새출결산(전망) 총계표 내용중 일반운영비를 무계획하게 수립하였기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액</li> <li>- '95년도 196,797,469</li> <li>- '96년도 24,219</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성의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보건행정과 | <p><u>제목</u> 비문관리 기록부</p><br><br><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br><p>예고문 기재후 근거에 의거 비문관리요<br/>(대의비문건)</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사회복지과 | <p> <u>제 목</u> 생보자금 융자건<br/><br/> <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br/><br/>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전 홍보하여 전원 주지시키고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요망                 </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가정복지과 | <p><u>제목</u> 어린이집 간식비 지급 건</p> <p>구립 어린이집에 2세까지 지원을 전어린이로 확대 서민 부담 경감요</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시립 어린이집은 가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저소득층) 자녀를 전원 간식비 지급요</p>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생활환경과 | <p>제 목 청소차량 정비건</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서울시에 관할 정비업소를 자치구에 위임 근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인력 절감요.</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사회복지과                   | <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노우대중 65세이상 17,990명 100% 발급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 65세이상 장애인 등에 식품접객업소 출입시 20%할인혜택 부여관련 경노우대중 발급 당부</li> </ul> </li> <li>○ 자활보호자 '83 ~ '89년도까지 643건 22,878,330원 결손 처분토록 당부</li> </ul> |    |
| 가정복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부실한 당산1동, 신길4동 등 운영활성화 당부</li> </ul>   |    |
| 사회복지과<br>가정복지과<br>생활환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중 과다예산 측정으로 불용액이 남은 사회복지과 노인정 관련 총 186,983천원, 가정복지과 26,950천원, 생활환경과 1,873,553천원 등 예산편성시 보완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li> </ul>   |    |
| 가정복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 구립 18개소중 16개소 냉방설비토록 예산편성 당부</li> </ul>   |    |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6. 11. 26.(화) ~ 12. 2.(월) (7일간)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건설국(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 각동사무소
- 나.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 위원장 | 간사  | 감사위원  | 전문위원 | 직원                 |
|-----|-----|---|------|--------------------|
| 안주영 | 문종준 | 김명환, 최재웅, 박정호, 배기한<br>권혁필, 조용호, 이중식, 조길형<br>이일희 | 유재한  | 사무국<br>직원2<br>속기사1 |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구청 5층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

### 6. 감사요령

별도 배부

###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 8.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별첨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공원녹지과 | <p><u>제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내 원두막 7개를 설치하였는데 2개가 소멸되었고, 현재 5개가 있음.</li><li>- 소멸내용 : 여의도에 1개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영등포로타리에 1개소는 파손제거 조치하였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도시민들의 정감어린 향수에 젖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주 택 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길제1동 53의 10 소재 재건축 경남APT 공사 현장 인접주택 3세대가 붕괴위험이 있음.</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경남주택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의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후 공사를 하여야 할 것 임.</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30.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행정과 | <p><u>제목</u>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여의도 13-3 맨하탄 호텔앞 노상주차장 33 구획이 되어 주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택시정류소와 불과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택시정류장 역할을 못하게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주차구획선과 택시승차대 위치를 다시 조정할 것.</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급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할 것.</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주 택 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 안전 점검(공동주택 안전진단)</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육안으로만 하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전문인력 및 점검장비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반영으로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설관리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보합 구역의 보상체결과 보상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책 결여</li> <li>1. 불보합구역 보상체결시 소수(2~4세대)의 피해를 낳은 사례</li> <li>2. 피해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 거의 매년 상이하게 기재되어 발송됨.</li> <li>3. 미해결건에 대한 공문서 보존상태 미흡</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보합 보상시 일부 극소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li> <li>2. 공문서의 내용이 해마다 상이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한 공문서의 신중한 작성</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6.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동사무소 | <p><u>제목</u> 동사무소의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에 많은 문제점이 사료됨.</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무소에서 96년 10월 20일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신길7동은 1,005대의 차량을 단속하였는가 하면 양평1동은 단 한대의 차량도 단속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잘한 동과 못한 동의 상·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사료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설관리과 | <p><u>제 목</u> 도로사용료 부당부과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으로(신축건물준공시 도로후퇴선) 부가하지 않아야 될 곳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사료됨.</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무원들의 업무교육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게 하여 한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된다고 사료됨.</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부 과 1 과 | <p><u>제 목</u> 종합토지세 부가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과와 협조미비로 부과하지 않아야 될(도로) 대지에 종합 토지세를 부과함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건물 준공시에는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종토세는 과세하지 말아야 되며, 징수한 세 금액은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된다고 사료됨.</li> </ul> <p>“확인서 별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축과  | <p><u>제목</u> 신축건물 준공시 후퇴선 문제점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축건물 준공시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 부과1과에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는 내지 않아도 될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는 실정임.</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앞으로 신축건물 준공시에는 필히 건축후퇴선(도로)은 기부채납된 도로에 대하여는 공부정리를 정확히 하여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li></ul> <p>“확인서 별첨”</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동사무소 | <p><u>제목</u> 동사무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문제점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문제점을 열심히 하는 동은 하지만 단 한건의 단속도 하지 않은 동이 4개동이나 됨으로 동사무소 근무의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됨.</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무단투기(동사무소) 단속을 96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각동 현황을 보면 신길7동은 68건의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하면 당산1동, 도림1·2동, 신길1동은 단 한건의 단속실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동사무소 운영비를 차등을 두어서 지급해야 된다고 사료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행정과 | <p><u>제 목</u> 순환버스 노선시설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p> <p>1. 지역순환 버스시설 건의내용</p> <p>- '95. 9. 27과 같은해 12. 21에 지역순환 버스노선 3개(제1노선: 구로공단역 ~ 영등포구청, 제2노선: 신도림역 ~ 대방역, 제3노선: 대방역 ~ 신풍시장) 노선을 서울시에 건의</p> <p>- '96. 6. 25 서울시에서 제1노선만 채택</p> <p>2. 시내버스 노선변경 건의내용</p> <p>- '95. 9. 27의 5차에 걸쳐 120번, 62-1번, 303번, 114번등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서울시 건의하였으며</p> <p>- '96. 10. 8에는 114번 등 9개노선 시내버스 사업자와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선변경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1. 지역순환버스 제1노선을 사업자선정을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요구</p> <p>2. 시내버스 노선변경 사항은 서울시에 재차 건의요구</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교통지도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내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법 제19조1항 무단 용도변경 2항 본래기능 미유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원상 회복시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단속을 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주차법 제29조1항과 2항을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였음.</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설관리과 | <p><u>제목</u> 가로판매점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로판매점에서 음식물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점유자의 명의변경 및 장소의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공무원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반행위가 없도록 할 것.</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지도과 | <p><u>제 목</u></p> <p>1. 부설 주차장 관리상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용도 변경으로 위법된 부분을 철저히 적발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분기별로 단속기간을 세울 것.</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교육 및 분기별 단속기간 설치로서 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확인서 별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지도과 | <p><u>제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차위반 단속차량의 운행일지 관리 소홀.</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용 차량의 관리에 있어 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함에도 운행일지의 이물 소홀히 함.</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토 목 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행정감사 자료 및 1997년 예산요구서 작성시 관심 미흡</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후 행정감사 자료 및 예산요구서 작성시 신중한 작성 요망</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치 수 과 | <p><u>제 목</u> 하수관 불법 매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당산동 6가 삼성APT 주변 노면수를 저지대 하수관으로 연결함으로 인하여 저지대 주택에 침수되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수관 불법매설을 철저히 단속하고, 매설지를 찾아서 주민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요구함.</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p>건 축 과</p> | <p><u>제 목</u> KBS본관 주차장 판매장 사용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본관 지하주차장 1층 일부 약 800평을 용도 변경없이 약 15년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음.</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1996년 11월 26일 KBS본관 용도변경 심의 신청서가 건축과에 접수 되었으므로 심의하여 시정 처리 요망.</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주택과  | <p><u>제목</u> 대림 2-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림 2-1지구 1064번지 일대 128필지 다세대주택 365호 재건축사업이 도로건설·상하수도 정비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속한 시일내 심의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바람.</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p>건설관리과</p> | <p><u>제 목</u> 도로관리 철거</p> <p>○ 영등포 7가 94-64 뒷골목 무단점유하고 있으나, 점용료 및 철거·조치 등의 조치가 없었음.</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 철거조치로 주민통행에 불편 없도록 시정조치 바람.</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7.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각 동  | <p><u>제목</u> 보안등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안등관리에 있어 일개업체로 집중 계약이 되어 있어, 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li>○ 업체별 계약 동<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성전기공사 15개동</li><li>- 삼산전기공사 6개동</li><li>- 화성전기공사 2개동</li><li>- 거성전기공사 1개동</li></ul>(3개동은 2개업체 복수계약)</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편중된 업체를 균일하게 또는 복수계약으로 유도 바람.</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지도과 | <p><u>제 목</u> 노상주차장 현장감사시 무질서 문제점</p> <p>○ 180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에 90도 각도로 주차를 해 놓고 45도로 주차를 해야 하는 곳에 90도 각도로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다녀야 하고 인도까지 차의 뒷부분으로 인도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보행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크다고 봄.</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 노상주차 차량은 항상 제 위치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송요출과장과 주차관리계 김영배계장은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음.</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설관리과 | <p><u>제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광, 영일시장 인도 및 차도 불법 점유</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광, 영일시장 상인들의 인도와 차도를 불법 점유차량 통행과 보행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바</li><li>◦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로 질서를 위해 근무요함.</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전 과  | <p><b>제 목</b> 구청에서 의회로 보내는 서면답변 허위보고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도 하반기 구의회의원의 서면질문한 답변을 보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입증되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li> </ul>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서는 구청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 주무과에 서면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보고를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함으로 이런 공무원은 공직에서 추방하든지 중징계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주 택 과 | <p><u>제 목</u> 보상지역 거주사실 조사시 일부세대 구성 불<br/>인정으로 인한 보상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실상의 분리 세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자에 대하여,<br/>부역을 같이 쓴다는 사유로 세대를 불인정하여 보상에서 제외<br/>되었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실조사시 사실상의 거주자(세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br/>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하기 바람.</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지도과 | <p><u>제 목</u></p> <p>○ 도립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p><br><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 도립초등학교 앞에 대형차량 무단 방치로 건널목 통행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전에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어린이 보호와 안전한 건널목 통행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8.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교통지도과<br/>지역경제과</p> | <p><u>제목</u> 조광시장 앞 도로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면 상권이 형성되고, 도로를 점용하여 보행은 물론 차도까지 막혀서 소통에 문제가 많음.</li> <li>2. 이로 인하여 하절기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많음.</li> </o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검토 바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한 도로가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li> <li>2.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교통대책이 완화되도록 협의 이전토록 함이 타당함.</li> </o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건설관리과</p> | <p><u>제목</u> 보상업무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도 보상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사고이월액이 많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업무 추진부서에서는 년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li> </ul> <p>첨부 : 확인서 1매. 끝.</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도시정비과 | <p><u>제 목</u> 광고물(무질서한 현수막 설치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상에 무질서(가로수, 전신주 등)하게 게시한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교통지도과 | <p><u>제 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동 1가 247번지 기계상가 주변인도(보도블럭)에 보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써 보행자는 인도사용을 못하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고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므로 차량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곳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곳임.</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동1가 247번지 기계상가 주변을 집중단속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해소할 것.</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공원녹지과 | <p><u>제목</u> 가로수 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길1동 116의 15 좌우측 15m 도로를 1991년도 개설하고 현재까지 가로수를 일체하지 않았음.</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년여 동안 식재하지 않았으므로 1997년도 식목일 전후 식재요망.</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주 택 과 | <p><u>제 목</u></p> <p style="margin-left: 20px;">양평 1-1 주거환경 개선 지구<br/>양평동 2가 37-5호<br/>약 5개월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문제점</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 style="margin-left: 20px;">○ 도시개발공사에 모든 상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망</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설관리과<br>교통행정과 | <p><u>제목</u> 건설관리과 직제개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행정계에 징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징수계를 신설하고 중기관리계를 교통행정과에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함.</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관리과에 징수계를 신설하여 세수 징수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에 중기관리계를 두어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29.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p>토 목 과<br/>건설관리과<br/>주 택 과</p> | <p><u>제 목</u> 예산편성시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재지 :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4-1, 40-1</li> <li>○ 예 산 : 3억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시행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li> <li>2. 대책없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li> <li>3.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산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li> </o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주 사용할 부서가 없는 바 이는 편성시부터 시행할 과와 사전협의 없이 편성된 예산사항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을 성의있게 처리할 것으로 사료됨.</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30.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건축과<br>생활환경과 | <p><u>제목</u> 구유지 점유</p> <p>○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2동 1057-20호<br/>재활용수집소</p> <p>1. 대림동 1057-20호 구유지 재활용수집소에 동 1057-27호의<br/>불법건물(계단) 점유</p>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p>1. 대림동 1057-20호 구유지에 불법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바,<br/>2.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br/>없도록 지도·단속하여야 할 것임.</p>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30.

| 대상기관  | 감 사 지 적 사 항   | 비 고 |
|-------|---|-----|
| 토 목 과 | <p><u>제 목</u> 육교설치공사장 주변 정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사 명 : 우신국교앞의 1개소 보도육교 설치공사</li> <li>○ 공사개요 : 육교설치(Steel Box)<br/>(B=6m, L=20.9m 및 L=21.8m)<br/>소형고압브럭포장<br/>(B=3~4m, L=610m 및 A=21.6a)</li> </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신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장 주변 보도정비 공사시<br/>신길동 226-75호앞 보도포장면이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음.<br/>- 요철개요 : B=1m, L=3m</li> <li>○ 즉시 정비 조치할 것.</li> </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30.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교통행정과<br>교통지도과 | <p><u>제목</u> 당산철교 철거후 교통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시 BUS가 회전하여 양화대교를 왕복하게 되면 교통혼잡도가 매우 심할 것을 생각할 때 미리 대책을 세울 것.</li></ul> <p><u>시정 및 처리요구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 코스로만 운행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쪽과 강남APT 건너편과 당2파출소 쪽에서 분산 운행할 것을 요구함.</li></ul> |    |

## 행정사무감사일일보고

'96. 11. 30.

| 대상기관  | 감사지적사항   | 비고 |
|-------|--|----|
| 주 택 과 | <p><b>제 목</b> 대림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p> <p>○ 관리처분 계획인가('96. 4. 6)와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96. 9. 24) 이전인 '94. 5. 13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 검토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하여야 하나 검토없이 인가한 영등포구청에 잘못이 있다 하겠음.</p> <p><b>시정 및 처리요구사항</b></p> <p>○ 6m도로 성토 검토하여 전면 하천 복개도로에서 일반 미관 건축설계를 하여 다용도 건축이 바람직하다 하겠음.</p> <p>단, 복개천 도로에서 개선지구 진입도로는 경사가 급하게 되므로 차 진입을 피하고 계단으로 하여 보도용 도로유도 바람직하다 하겠음.</p> |    |

##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996.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9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9월 1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96. 12. 13)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총괄

(단위 : 원)

| 구 분   | 총 괄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                |
|-------|-----------------|-----------------|---------------|-------------|----------------|
|       |                 |                 | 의료보호기금        | 새마을소득지원     | 주차장시설비         |
| 예 산 액 | 114,687,349,100 | 97,101,807,000  | 1,001,300,100 | 205,326,000 | 16,378,916,000 |
| 예산현액  | 120,412,022,100 | 102,826,480,000 | -             | -           | -              |
| 세 입   | 121,866,831,664 | 105,912,201,911 | 1,009,664,785 | 427,034,705 | 14,517,930,163 |
| 세 출   | 87,358,230,855  | 84,551,346,515  | 996,632,410   | 170,000,000 | 1,640,251,930  |
| 이 율 액 | 34,508,600,809  | 21,360,855,396  | 13,032,375    | 257,034,705 | 12,877,678,333 |

○ 예비비 결산조서

(단위 : 원)

| 예산과목   | 지출원인<br>행위액 | 지불액         | 내역                       | 비고 |
|--------|-------------|-------------|--------------------------|----|
| 내무행정비  | 46,000,000  | 46,000,000  | - 구청사 주차관계 시설운영          |    |
| 보건위생비  | 34,000,000  | 34,000,000  | - 일본 뇌염접종                |    |
| 지역경제비  | 1,203,000   | 1,203,000   | - 수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재해 구호비 지출 |    |
| 도시계획관리 | 279,028,000 | 279,028,000 | - 버스 전용차선 및 차량 10부제 운영   |    |
| 주택사업   | 90,411,000  | 90,411,000  | - 박사원 사기사건 배상금 지출        |    |

3. 審査結果 : 원안 의 결

### '97회계년도 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1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제2, 3, 4, 6, 7차 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 '97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 '97 예산안           | '96 예산      | 증△감         | 증감율(%)    |       |
|------|-------------------|-------------|-------------|-----------|-------|
| 총계   | 129,961,168       | 140,715,548 | △10,754,380 | △7.6      |       |
| 일반회계 | 103,126,000       | 116,113,449 | △12,987,449 | △11.2     |       |
| 특별회계 | 소계                | 26,835,168  | 24,602,099  | 2,233,069 | 9.1   |
|      | 의료보호기금            | 1,459,244   | 1,052,055   | 407,189   | 38.7  |
|      | 주민소득지원및<br>생활안전기금 | 545,895     | 210,818     | 335,077   | 158.9 |
|      | 주차장               | 24,830,029  | 23,339,226  | 1,490,803 | 6.4   |

- 주요재원.....129,961,168천원
  - 일반회계.....103,126,000천원
    - 구세:56,557,130천원      세외수입:29,219,732천원
    - 보조금: 7,345,138천원      조정교부금:10,004,000천원
  - 특별회계.....26,835,169천원
    - 세외수입:25,386,168천원      보조금:1,449,000천원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영훈, 유재한)

## 가. 운영위원회 소관

- '97년도 의회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의사운영비는 의무적·필요적 경비외에는 절감하려고 노력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지역간·단체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대부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경비로서, 법령·조례 등의 지급 근거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려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 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3실 및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의견은 몇가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첫째, 현재 각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법원이 전원 복귀하여 각동과 현업부서에서 단속업무나 업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소운영비, 피복비, 초소연료비 등은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97년도 예산은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각 항목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은 소비적인 요소 및 과다편성이거나 통합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절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정준칙으로서 예산(안) 제출 전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금번 정기회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당산2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면서 '97년도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모순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 기금은 15억 7,564만원으로 '95년도부터 자체 기금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7년도 납기분을 보면 1억, 3,187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88년부터 '96년까지의 융자금 채납분 징수예상액이 3,555만원뿐이라는 것은 융자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재무국이 '97년도 세입예산 1,031억 2,600만원 재원확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재무국소관 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97년도 세입 예산안의 정확한 추계(전망)가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세출측면에서는 특별히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적관리의 지가조사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는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50%이내의 국고보조가 있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에서 파악할 수 없는 국고 내역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87억 6,47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5,924만 4천원으로 총 302억 2,404만원이며 이중 23.3%가 시민생활국 예산으로 사회복지의 경상적 경비에 있어 신규사업이 몇가지 늘어났는데 세입 예산의 감소를 볼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 경기의 호전을 보아가며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여성위원회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 지원하고 있던 단체외에 신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업체 스스로 개척하고 홍보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됨.
- 보건소 소관 예산은 세입분야 총 3억 5,092만원이며, 세출은 31억 9,467만3천원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증액편성된 것이나 자산취득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구입하도록 하여 세입 감소에 따라 적정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도시정비국 소관 '97예산은 일반회계 15억 8,795만 2천원과 특별회계 248억 3,002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4개과에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포상금 자산취득비가 늘어남으로 6.4%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화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진촬영에 따른 소모성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민영 노외주차장 건설 용자금 신설은 앞으로 공단설립에 따른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에 더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므로 민영 용자금은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건설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162억 5,742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도로건설, 상·하수관리와 하천관리 및 도시공원관리이며 증액된 분야는 건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 가로정비 안내 표시판 설치를 25개소에 할 것이라는 계획은 단속원이 단속을 하여도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와서 하곤 하는데 표시판 설치로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를 보아 년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평2동의 도로건설 예산은 중기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신길근린공원과 삼지 어린이공원의 보상은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상하였으나 '97년에는 없어 구자체 예산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부분 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조정규모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 구청제출<br>'97예산액 | 수 정 액 |   |           |           | 수정후<br>예산액  |
|------|----------------|-------|---|-----------|-----------|-------------|
|      |                | 세 입   |   | 세 출       |           |             |
|      |                | 감     | 증 | 감         | 증         |             |
| 총 계  | 129,961,168    | -     | - | 1,291,878 | 1,291,878 | 129,961,168 |
| 일반회계 | 103,126,000    | -     | - | 1,291,878 | 1,291,878 | 103,126,000 |
| 특별회계 | 26,835,168     | -     | - | -         | -         | 26,835,168  |

나. 회계별 수정 내역

- 특별회계 : 조정내역 없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항    | 목             | 수 정 액     |           | 수 정 내 역   | 비고 |
|------|---------------|-----------|-----------|---|----|
|      |               | 삭 감       | 증액        |   |    |
| 계    |               | 1,291,878 | 1,291,878 |   |    |
| 공보관리 | 일 반 운 영 비     | 4,400     |           | 문화강좌 교재 제작에서<br>4,400,000원 삭감                       |    |
|      | 일 반 운 영 비     | 24,000    |           | 구정홍보 게시판 홍보물제<br>작에서 24,000,000원 삭감                 |    |
| 서무관리 | 일 반 업 무 추 진 비 | 5,000     |           | 각종행사 지원에서 5,000,<br>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5,000     |           | 주요구정 업무추진에서 5,<br>000,000원 삭감                       |    |
| 인사관리 | 일 반 운 영 비     | 6,000     |           | 버스임차(명절귀향버스)에<br>서 6,000,000원 삭감                    |    |
|      | 자 산 취 득 비     | 125,000   |           |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에<br>서 125,000,000원 삭감                  |    |
| 사회진흥 | 일 반 업 무 추 진 비 | 3,000     |           | 자매결연지 생활체육 동호<br>인 상호 친선경비(3개군)에<br>서 3,000,000원 삭감 |    |
|      | 사 회 단 체 보 조 금 | 8,000     |           | 기타사회단체 지원금에서<br>8,000,000원 삭감                       |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항            | 목             | 수 정 액   |    | 수 정 내 역                              | 비고 |
|--------------|---------------|---------|----|--------------------------------------|----|
|              |               | 삭 감     | 증액 |                                      |    |
| 일선행정<br>조직운영 | 보 상 금         | 5,000   |    | 시민참여 행사지원에서 5,000,000원 삭감            |    |
| 민 방 위<br>관 리 | 시 설 비 등       | 3,340   |    | 비상대피호 철거(신길5동)에서 3,340,000원 삭감       |    |
| 지역안정<br>관 리  | 인 건 비         | 165,309 |    | 수당에서 165,309,000원 삭감                 |    |
|              | 관 서 당 경 비     | 15,540  |    | 기본급식 및 여비에서 15,540,000원 삭감           |    |
|              | 일 반 운 영 비     | 31,200  |    | 초소운영비에서 31,200,000원 삭감               |    |
|              | 일 반 운 영 비     | 5,887   |    | 연료비에서 5,887,000원 삭감                  |    |
| 위생관리         | 보 상 금         | 500     |    | 변태퇴폐업소 및 부정불량 식품신고 보상금에서 500,000원 삭감 |    |
| 환경관리         | 일 반 업 무 추 진 비 | 2,400   |    | 녹색영등포 구민실천 위원회 운영비에서 2,400,000원 삭감   |    |
| 청소관리         | 일 반 수 용 비     | 7,824   |    | 공중변소 수리비에서 70824,000원 삭감             |    |
|              | 민 간 이 전       | 120,000 |    | 요양보상비에서 120,000,000원 삭감              |    |
|              | 민 간 이 전       | 30,000  |    | 휴업보상금에서 30,000,000원 삭감               |    |
| 사회복지         | 보 상 금         | 8,000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에서 8,000,000원 삭감      |    |
| 노인복지         | 일 반 업 무 추 진 비 | 700     |    |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체 임원간담회에서 700,000원 삭감     |    |
|              | 보 상 금         | 2,400   |    | 청소년선도 할아버지 봉사료에서 2,400,000원 삭감       |    |
|              | 보 상 금         | 60,000  |    | 창변경찰 노인봉사 활동비에서 60,000,000원 삭감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항     | 목             | 수 정 액 |    | 수 정 내 역                              | 비고 |
|-------|---------------|-------|----|--------------------------------------|----|
|       |               | 삭감    | 증액 |                                      |    |
| 부녀복지  | 특 수 활 동 비     | 3,000 |    | 시민알뜰장 평가시상금에서 3,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900   |    | 요보호 선도대책위원회회의의 진행 및 운영에서 9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200   |    | 모자복지 위원회 회의비에서 2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1,800 |    | 여성단체 회의의 진행비에서 1,8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600   |    | 여성자원 활동자 격려 간담회에서 6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1,400 |    | 전물군경 유족 및 미망인회 위안에서 1,400,000원 삭감    |    |
|       | 특 수 활 동 비     | 580   |    | 노래자랑 시상에서 580,000원 삭감                |    |
|       | 보 상 금         | 4,000 |    | 주부환경 봉사단 지원에서 4,000,000원 삭감          |    |
|       | 보 상 금         | 4,000 |    | 여성단체 연합지원에서 4,000,000원 삭감            |    |
|       | 자 산 취 득 비     | 480   |    | 부녀상담소 장비구입에서 480,000원 삭감             |    |
|       | 자 산 취 득 비     | 1,200 |    | 부녀교실 조리반 탁자에서 1,200,000원 삭감          |    |
| 보건행정관 | 일 반 운 영 비     | 1,200 |    | 환경 개선비에서 1,200,000원 삭감               |    |
| 주택기획  | 특 수 활 동 비     | 600   |    |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민원 조정에서 600,000원 삭감      |    |
|       | 시 설 비 등       | 5,000 |    | 대형 건고가설물 철거 용역에서 5,000,000원 삭감       |    |
| 건축지도  | 일 반 업 무 추 진 비 | 778   |    | 건축심의 및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에서 778,000원 삭감  |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항          | 목         | 수 정 액   |    | 수 정 내 역   | 비고 |
|------------|-----------|---------|----|---|----|
|            |           | 삭감      | 증액 |   |    |
| 도시공원<br>관리 | 시 설 비     | 200,000 |    | 신길 근린공원 조성에서<br>200,000,000원 삭감                 |    |
| 녹지관리       | 일 반 운 영 비 | 10,000  |    | 꽃묘 구입에서 10,000,000원<br>삭감                       |    |
|            | 시 설 비     | 70,000  |    | 도심내 농촌풍경 조성에서<br>70,000,000원 삭감                 |    |
|            | 시 설 비     | 50,000  |    | 당산역 주변 녹지대 정비에<br>서 50,000,000원 삭감              |    |
|            | 시 설 비     | 100,000 |    | 노들길 녹지대 정비에서<br>100,000,000원 삭감                 |    |
| 건설행정       | 일 반 운 영 비 | 6,000   |    | 가로정비 안내판지판에서<br>6,000,000원 삭감                   |    |
|            | 시 설 비     | 12,900  |    | 가로판매점 도색에서 12,<br>900,000원 삭감                   |    |
|            | 시 설 비     | 2,400   |    | 노점상 단속초소 전기시설<br>에서 2,400,000원 삭감               |    |
| 도로건설       | 시 설 비     | 50,000  |    | 여의도 국회앞 지하보차도<br>방송시설 설치 공사에서<br>50,000,000원 삭감 |    |
| 공보관리       | 보 상 금     | 47,800  |    | 구립 합창단 설립운영에서<br>47,800,000원 삭감                 |    |
| 기획관리       | 특 수 활 동 비 | 6,400   |    |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포괄<br>에서 6,400,000원 삭감               |    |
| 노인복지       | 보 상 금     | 20,000  |    | 노인대학 개설운영에서<br>20,000,000원 삭감                   |    |
| 부녀복지       | 보 상 금     | 4,800   |    | 여성봉사단 운영에서 4,800,<br>000원 삭감                    |    |
| 노인복지       | 일 반 운 영 비 | 12,300  |    | 노인농장 개설용품 구입비<br>에서 12,300,000원 삭감              |    |
|            | 일 반 운 영 비 | 21,500  |    | 노인농장 임차료, 수송버스<br>임차료에서 21,500,000원 삭<br>감      |    |
|            | 자 산 취 득 비 | 13,540  |    | 노인농장 관련 물품 구입에<br>서 13,540,000원 삭감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항           | 목           | 수 정 액 |           | 수 정 내 역                                 | 비고 |
|-------------|-------------|-------|-----------|---|----|
|             |             | 삭 감   | 증 액       |   |    |
| 계           |             |       | 1,291,878 |   |    |
| 사회진흥        | 일 반 운 영 비   |       | 1,373     | 애프 및 기타 장비유지비에 1,373,000원 증액            |    |
|             | 일 반 운 영 비   |       | 8,000     | 생활체육 교실지도자 수당에 8,000,000원 증액            |    |
|             | 시 설 비 등     |       | 65,000    | 대림운동장 시설보수 정비에 65,000,000원 증액           |    |
| 지역안정<br>관 리 | 일 반 운 영 비   |       | 13,320    | 급량비에 13,320,000원 증액                     |    |
|             | 여 비         |       | 72,660    | 국내여비에 72,660,000원 증액                    |    |
| 노인복지        | 시 설 비 등     |       | 200,000   | 신길1동 경로당 건립에 200,000,000원 증액            |    |
| 청소관리        | 포 상 금       |       | 5,000     | 무단투기 단속포상에 5,000,000원 증액                |    |
|             | 여 비         |       | 6,000     | 현장작업 감독 및 무단투기 단속에 6,000,000원 증액        |    |
|             | 여 비         |       | 2,400     | 오수·정화조 지도점검에 2,400,000원 증액              |    |
|             | 시 설 비 등     |       | 64,325    | 영동포3동 공중화장실 신축에 64,325,000원 증액          |    |
| 상 하 수 리     | 민 간 자 본 이 전 |       | 300,000   |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300,000,000원 증액             |    |
| 도로건설        | 시 설 비 등     |       | 52,000    | 문래2가 7-5~46-6구간 도로포장 공사에 52,000,000원 증액 |    |
|             | 시 설 비 등     |       | 291,000   | 도로시설물 보수정비에 291,000,000원 증액             |    |
| 노인복지        | 보 상 금       |       | 30,000    |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 봉사료에 30,000,000원 증액      |    |
| 상 하 수 리     | 시 설 비 등     |       | 180,000   | 치수하수 시설물 보수정비에 180,000,000원 증액          |    |
| 예 비 비       | 예 비 비       |       | 800       | 예비비에 800,000원 증액                        |    |

※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

5.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 '97 회 계 년 도 예 산(안)

|          |    |
|----------|----|
| 의안<br>번호 | 97 |
|----------|----|

제안년월일 : 1996. 11. 21.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 '97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확정을 얻고자 함.

## 2.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 '97 예산안                      | '96 예 산     | 증 △ 감       | 증감율(%)    |       |
|------------------|------------------------------|-------------|-------------|-----------|-------|
| 총 계              | 129,961,168                  | 140,715,548 | △10,754,380 | △7.6      |       |
| 일 반 회 계          | 103,126,000                  | 116,113,449 | △12,987,449 | △11.2     |       |
| 특<br>별<br>회<br>계 | 소 계                          | 26,835,168  | 24,602,099  | 2,233,069 | 9.1   |
|                  | 의 료 보 호 기 금                  | 1,459,244   | 1,052,055   | 407,189   | 38.7  |
|                  | 주 민 소 득 지 원 및<br>생 활 안 전 기 금 | 545,895     | 210,818     | 335,077   | 158.9 |
|                  | 주 차 장                        | 24,830,029  | 23,339,226  | 1,490,803 | 6.4   |

- 주요재원.....129,961,168천원
  - 일반회계..... 103,126,000천원
    - 구 세 :56,557,130천원      세 외 수 입:29,219,732천원
    - 보조금 : 7,345,138천원      조정교부금:10,004,000천원
  - 특별회계.....26,835,169천원
    - 세외수입:25,386,168천원      보조금:1,449,000천원